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

의안 번호	187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대안 제안 경위

- 2020년 8월 12일 송재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835)과 2020년 8월 12일 권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856)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(2020.9.9.)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 제안 이유

- 「부당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)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, 현행 조례상 제18조(성희롱 금지) 조항에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 내용

-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을 정비함(안 제14조).
 -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, 사전 신고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.
 -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- 의장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8조제2항 신설).
- 의장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(안 제19조제3항)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항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”을 “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외부강의 등을”을 “의원의 외부강의 등을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성희롱 금지)”를 “(성희롱 금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자문하여야 한다”를 “자문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<u>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</u>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</p>	<p>제14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항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</u>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⑤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하는 경우에는 그 <u>외부강의 등을</u>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 <p>제18조(성희롱 금지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19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<u>자문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-----<u>의원의 외부강의 등을</u>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성희롱 금지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9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자문</u>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